

계 약 특 수 조 건

1.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 협회가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·완료하여야 한다.
2. 계약자는 납품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 및 사용 권한 (License)을 협회에 이전하되, 특허권 또는 지적 소유권 등의 분쟁발생시 모든 책임을 지며, 납품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최종 책임져야 한다.
3. 계약자는 납품 설치시 협회 Network 장비 및 기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연결 등 호환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품과 기술을 제공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.
4. 계약자는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, 제조사로부터 발행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확약서, 기술지원확약서를 납품 시 제출해야 한다.
5. 계약자는 기존운영중인 시스템의 활용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프로그램 개발사 등 관련 업체와 업무협의 및 일정 등을 조정하여 설치해야 한다.
6. 계약자는 전산담당자의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.
7. 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은 협회 정보관리실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.
8. 계약자는 납품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.